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6다202857 손해배상(기)  
원고, 피상고인 유한회사 ○○○레미콘 외 1인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 
피고, 상고인 피고 1 외 1인  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 
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 
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6. 2. 26. 선고 2024나24677 판결  
판 결 선 고 2026. 8. 12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 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

가.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(민사소송법 제64조, 제60조 참조).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(민사소송법 제265조,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18184 판결 참조),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(민법 제170조 참조).

나. 원심은,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판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## 2.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

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타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,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## 3.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

피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,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.

## 4. 결론

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박영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오경미

주   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권영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엄상필